

창원 의회 소식

제4호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council.changwon.go.kr





CONTENTS

04 개 회 사

06 주요안건처리현황

- 제15회 임시회 (2011.12.27 ~ 12.29)
- 제16회 임시회 (2011.12.31)
- 제17회 임시회 (2012. 1.30)
- 제18회 임시회 (2012. 2.28 ~ 3. 7)

22 예산심의 활동

27 시정에 관한 질문

30 5분자유발언

32 건 의 서

고리원전 1호기 즉각폐기와 원전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건의안

34 위원회 활동

38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40 언론보도자료

44 언론사 기고문

발행일 2012. 5

발행인 창원시의회의장

발행처 창원시 의회사무국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T 055 225 5331~5 council.changwon.go.kr

●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희망찬 새 봄을 알리는 우수가 지나가고 올해 의정운영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제18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지난해 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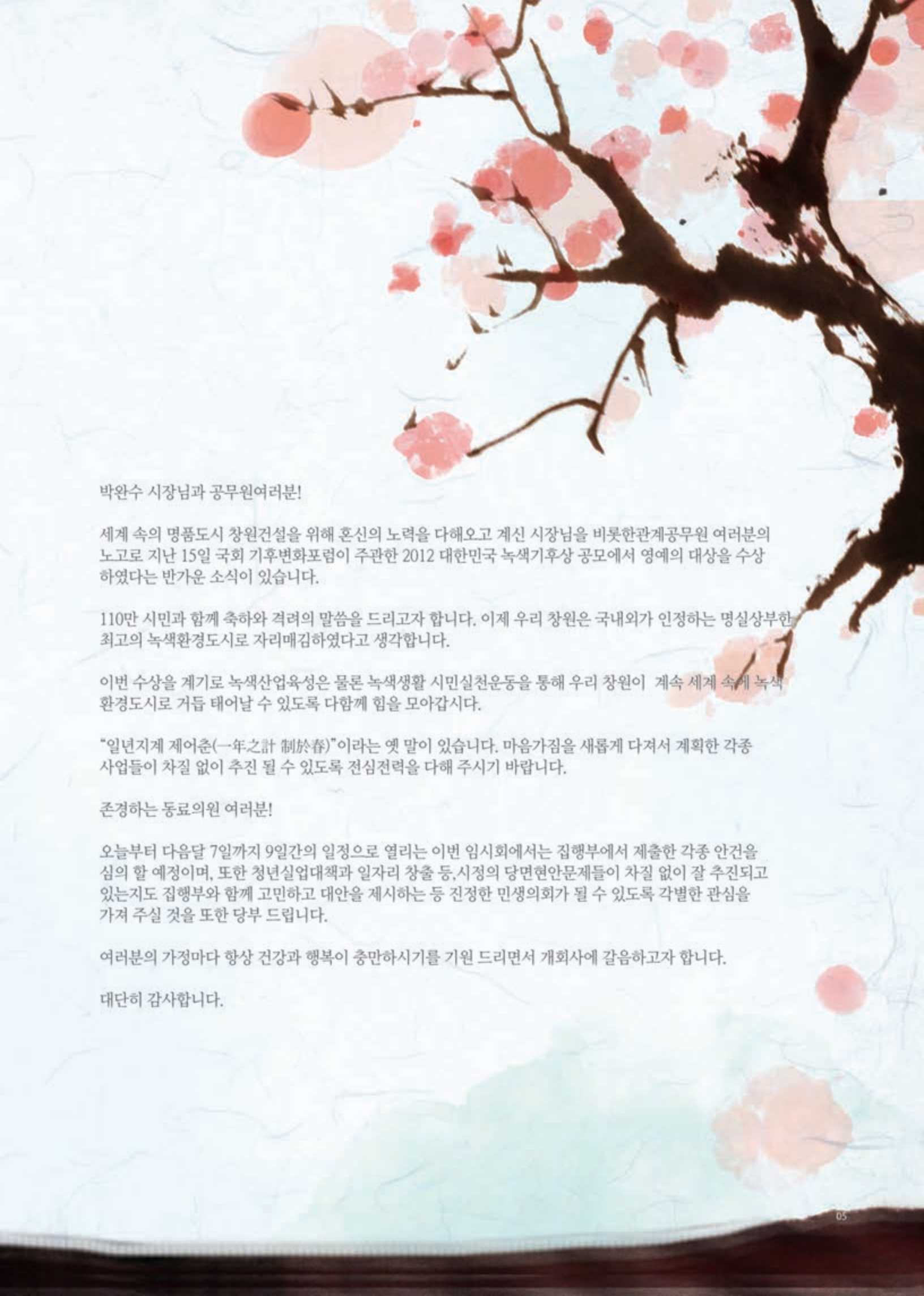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한 국제정세, 양대 선거 등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는 소통을 중시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라는 동료의원님의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갖고 태어난 갓난아기는 두 사람으로 셀 것인지, 한 사람으로 셀 것인지 이 물음에 대한 탈무드의 답은 한 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른 한 쪽의머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답은 유태인의 민족성을 얘기할 때 종종 인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 대한 정말 멋지고 명쾌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지난 15일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관한 2012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10만 시민과 함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창원은 국내외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녹색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녹색산업육성은 물론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우리 창원이 계속 세계 속에 녹색환경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일년지계 제어춘(一年之計 制於春)”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며, 또한 청년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시정의 당면현안문제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주요안건 처리현황

01

제15회 임시회

(2011. 12. 27~12. 29)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개정이유
 - 1)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구청장 직급상향 등 근거 마련에 따라 구청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한 조직으로 재 설계 하고,
 -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위한 소방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1)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구청장 직급상향 등 근거 마련에 따라 구청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한 조직으로 재 설계하고,
 -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위한 소방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 (행정안전부)」에 의거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민원 편의증진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청기능 강화에 따라, 시장권한 사무 중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사무, 관리·집행사무 등 구청이관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 하여 시민편의 위주 조직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경상남도의 소방사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경상남도의 소방사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각종 위험물로부터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경상남도의 소방사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창원시정에 맞는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0.10.1. 법률 제10397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6호에서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 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구성 운용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설치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경상남도의 소방사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창원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안건 처리현황



01

제15회 임시회

(2011. 12. 27~12. 29)

•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제36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의 규정에 의거
 - 나) 소방업무의 사무특례 및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도세에서 시세로 하여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2012. 1. 1시행)함에 따라 시세로 이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의 세목에 추가하고자 함.

•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 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제36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의 규정에 의거
 - 나) 소방업무의 사무특례 및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도세에서 시세로 하여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2012. 1. 1시행)함에 따라 시세로 이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따라 2012. 1. 1부터 창원시 소방업무 시범실시에 따른 소방업무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조례 정비.



주요안건처리현황



•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을 의결받고자 함.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런던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유기성폐기물(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으로 가축분뇨를 육상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며,

나) 2010년 10월 환경사업소 덕동분뇨처리장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연계 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 일부개정.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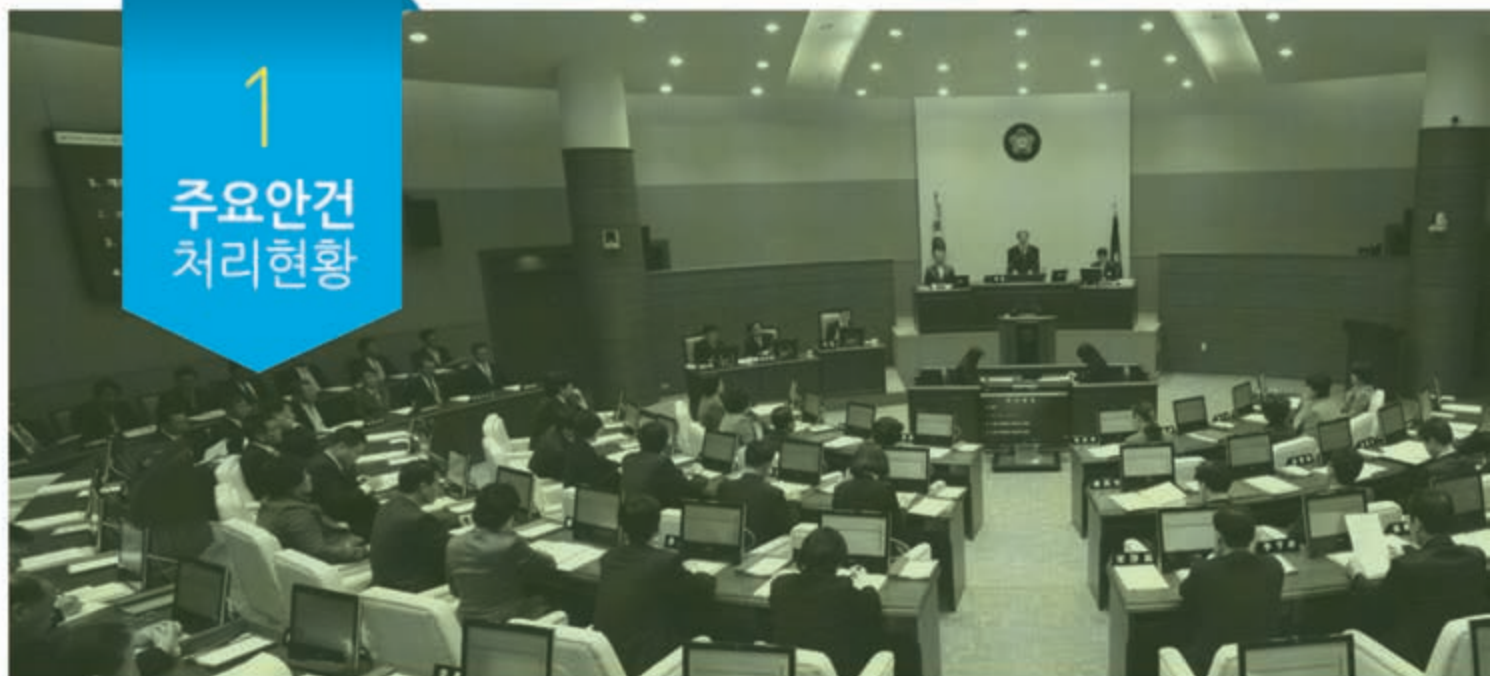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02

제16회 임시회

(2011. 12. 31)



03

제17회 임시회

(2012. 1. 30)

■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에 있어 일비가 현실에 못 미쳐 현실화 하고 또한, 감사위원이 공무상 출장시 명확한 여비 규정이 없어 본 조례에 명문화 하여 결산 검사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본 조례를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5일로 하여 하반기 원구성 및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함.

■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6조, 부칙 제1조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사무 수행에 따른 소방기구 상임위원회 지정과 구청 과 신설 및 통합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함.

■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의회 개원시 의사일정 작성은 원 구성이 안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가 안되며, 또한 의장 선출이 되기 이전이기에 의장이 작성할 수도 없어 본회의 의결로 의사 일정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도 예산안과 같은 절차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및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의회담당관을 두어 사무를 분장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구정의 기능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각 구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3

제17회 임시회

(2012. 1. 30)

■ 『창원시도시개발공사』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의견채택
- 제안이유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차질 없는 설립과 원활한 운영 도모.

■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갈등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역량강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2011년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시 오동동·창동·어시장 권역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용범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수도급수조례 읍·면지역 시설분담금의 통합 전후 조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시설 분담금을 조정하여 시민의 불만을 해소코자 「창원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안건처리현황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하수도 법」 제26조가 삭제되어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공공 하수도 사 용료 감면 기준에 “산업용”을 포함 하고자 하는 것임.

■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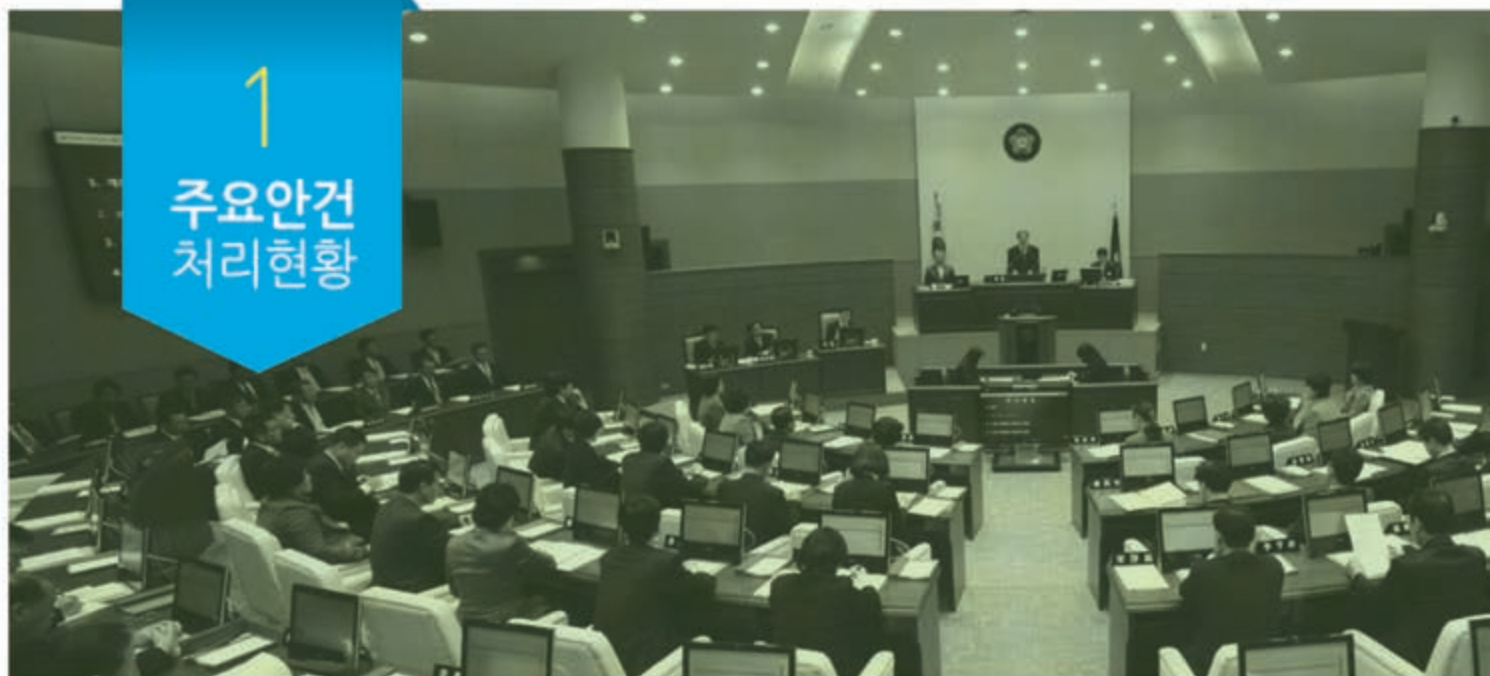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보류
- 제안이유
1)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항만의 새로운 시각에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형성되면서 민관협의조정위원회 개최 및 정부 TF 회의를 통하여 항로수심을 줄여(13m→12.5m)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대폭 축소 하고, 기존부두(218,457㎡)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2)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 우려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3)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이 불가피하여 본 사업 및 국책 사업의 원활한 연계추진을 위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 「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의견채택
- 제안이유
본 구역은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사업추진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창원시 의회 의결을 청취코자 함.

■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강기일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개정이유
창원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03

제17회 임시회

(2012. 1. 30)

■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심경희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진동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사업 일환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체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진동종합 복지타운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송순호의원, 김성준의원, 조갑련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삼계근린공원 내 내서운동장이 2010년 8월 19일 개장을 하였지만 사용료 징수, 야간사용, 운동장 전용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바 내서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문화예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창원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공연·전시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개정 2007. 8. 3, 2010. 7. 23)에 따라 동 조례의 취지와 쓰레기 수수료 징수방법,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조항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 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또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 1. 1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6개소 전체의 58%)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 5(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의 한시적 적용에 따른 조례 제정
나) 「폐기물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이하)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 제한 규정이 창원·마산·진해지역 각각 달리 적용으로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역별로 분리·적용하고 있는 별표1부터 별표28까지 용도 지역·지구 등을 통일하여 통합시의 균형발전도모와 현행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3

제17회 임시회

(2012. 1. 30)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일부 개정(2010.10.21) 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해야 하며, 2010.7.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창원·마산·진해지역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어 통합 시행으로 민원인의 혼선 예방 및 주차질서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조례위임, 의무비율 조정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2011.6.27)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찬성의견
- 제안이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2008.11.3)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추가 해제 가능량 확보를 위하여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안건처리현황



04

제18회 임시회

(2012. 2. 28 ~ 3. 7)

■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제 안 자 : 노창섭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개정이유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 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명예시민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지조성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舊) 법정동 명칭과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의 도모

■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일몰기간 설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정비

■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노인 인구가 많은 진해구 서부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2008년 중평동 7-2번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무산되고 현재까지 미건립 상태로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 가중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와 노인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창원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 (안)을 의결 받고자 함.

■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경제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2. 1.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04

제18회 임시회

(2012. 2. 28 ~ 3. 7)

■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김윤희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정이유

4대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정이유

장애인들이 체육활동과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장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가칭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2011. 8. 29 준공됨에 따라 시설명칭을 공모한 결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으로 확정되어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김윤희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정이유

단원 신분, 임금 체계, 위촉 기간 등이 각기 상이하여 창원·마산·진해 3개 지역 유보조례로 지역별 따로 운영하던 시립예술단을 통합시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함

■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정이유

창원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정이유

3개 지역 개별(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시의 위상에 걸 맞는 지방 문화예술 창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시달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 업무추진 및 최상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방향을 사후 관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지침 시달에 따라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주요안건 처리현황



04

제18회 임시회

(2012. 2. 28 ~ 3. 7)

■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재정이유

유보조례로 되어 있는 창원시 통합 전 조례의 통합 조례안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재정이유

우리시 천선동 대단위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매립장 설치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생활 지원을 위하여 건립 운영하는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립하고자 함

■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찬성의견
- 채택이유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구 읍면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347호(2008.12.18)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미세분 관리지역과 산림청 고시 제166호(2008.12.26) 및 제6호(2011.02.15)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안건처리현황



■ 2020년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찬성의견
- 채택이유

2010년 7월 통합창원시의 출범에 따라 공간적 통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 기능 및 환경을 개선코자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 제 안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부결
- 개정이유

본 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산항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구 마산시가 정부 및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2010년 7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항만의 새로운 시각에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형성되면서 민관협의 조정위원회 개최 및 정부 TF회를 통하여 항로 수심을 줄여(13m→12.5m)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 부두(218,457㎡)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 우려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및 상업 시설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이 불가피하여 본 사업 및 국책사업의 원활한 연계추진을 위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고리원전 1호기 즉각폐기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 제 안 자 : 김종대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원자로 54기 중 52기가 가동중단 중이고, 15만여 명이 피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제2후쿠시마 공포로 공황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고자 가동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건의안

- 제 안 자 : 차형보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선양(瀋陽)에서 체포된 10여명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강제송환이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온 국민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

2 예산심의 활동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구성개요 |

- 일 시 : 2011. 11. 25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위원수 : 11명
- 안건명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명단

위원장	간 사	위 원
강동화	전수명	차형보, 노창섭, 이희철, 강기일, 장병운, 김문웅, 조갑련, 이해련, 정영주

| 위원회 활동 내역 |

- 제 1차 회의(2011. 11. 25) : 위원장, 간사 선임
- 제 2차 회의(2011. 12. 7)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제 3차 회의(2011. 12. 8)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 심사결과 |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수정가결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총괄(예산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비 고
			금 액	증감율(%)	
계	2,506,212,578	2,262,134,544	244,078,034	10.79	
일반회계	1,888,106,064	1,717,642,402	170,463,662	9.92	
특별회계	618,106,514	544,492,142	73,614,372	13.5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합계	2,506,212,578	100.00	2,262,134,544	100.00	244,078,034	10.79
일반회계	1,888,106,064	75.34	1,717,642,402	75.93	170,463,662	9.92
특별회계	618,106,514	24.66	544,492,142	24.07	73,614,372	13.52
공기업특별회계	316,604,331	12.63	211,242,247	9.34	105,362,084	49.88
상수도사업	105,930,182	4.23	106,779,422	4.72	△849,240	△0.80
하수도사업	79,046,925	3.15	71,878,783	3.18	7,168,142	9.97
주택건설사업	29,463,974	1.18	25,591,793	1.13	3,872,181	15.13
공영개발사업	2,113,250	0.08	6,992,249	0.31	△4,878,999	△69.78
지역개발기금	100,050,000	3.99	0	0.00	100,050,000	100.00
기타특별회계	301,502,183	12.03	333,249,895	14.73	△31,747,712	△9.53
경륜운영	88,270,672	3.52	84,436,565	3.73	3,834,107	4.54
기타경륜	22,083,469	0.88	16,881,949	0.75	5,201,520	30.81
중소기업육성기금	14,168,352	0.57	19,100,260	0.84	△4,931,908	△25.82
농공단지조성사업	131,903	0.01	180,896	0.01	△48,993	△27.08
의료급여기금	7,127,990	0.28	6,490,912	0.29	637,078	9.8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400,000	0.18	5,339,860	0.24	△939,860	△17.60
창원도시개발사업	46,192,880	1.84	63,916,061	2.83	△17,723,181	△27.73
마산도시개발사업	5,000	0.00	261,880	0.01	△256,880	△98.09
창원기반시설	3,928,825	0.16	3,823,692	0.17	105,133	2.75
마산기반시설	1,280,225	0.05	936,300	0.04	343,925	36.73
전해기반시설	99,920	0.00	102,256	0.00	△2,336	△2.28
주차장운영	3,330,846	0.13	2,864,908	0.13	465,938	16.26
교통사업	14,488,605	0.58	12,914,856	0.57	1,573,749	12.19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1,000,000	0.04	0	0.00	1,000,000	100.00
새마을소득사업	1,067,855	0.04	1,033,840	0.05	34,015	3.29
농어민후계유자지원	129,606	0.01	129,606	0.01	0	0.00
수질개선	4,957,824	0.20	4,540,823	0.20	417,001	9.18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11,779,830	0.47	4,427,310	0.20	7,352,520	166.07
지방산업단지조성산업	11,779,830	1.01	52,685,172	2.33	△27,306,624	△51.83
산업기지개발산업	180,000	0.01	510,000	0.02	△330,000	△64.71
감계지구도시개발	25,219,274	1.01	23,124,941	1.02	2,094,333	9.06
동전지구도시개발	3,087,916	0.12	5,400,000	0.24	△2,312,084	△42.82
무동지구도시개발	12,688,643	0.51	15,902,808	0.70	△3,214,165	△20.21
해양신도시건설사업	10,504,000	0.42	8,095,000	0.36	2,409,000	29.76

2 예산심의 활동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

•총괄

(단위:백만원)

기금수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수 입	지 출		
13개 기금	102,342	107,567	110,328	99,581	△2,761

•기금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수 입	지 출		
합 계	102,342	107,567	110,328	99,581	△2,761
지방채상환적립기금	1,811	16	1,305	522	△1,289
육외광고경비기금	39	8	0	47	8
중소기업육성기금	41,381	1,448	1,448	41,381	0
투자유치진흥기금	7,158	141	2,608	4,691	△2,46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264	151	132	2,283	19
자활기금	2,033	190	250	1,973	△60
노인복지기금	4,170	135	135	4,170	0
여성발전기금	7,753	281	250	7,784	31
농업발전기금	12,623	458	245	12,836	21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민지원기금	2,356	614	55	2,915	559
식품진흥기금	611	155	155	611	0
부대이전사업기금	0	101,376	101,376	-	0
재난관리기금	20,143	2,594	2,369	20,368	22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구성개요 |

- 일 시 : 2011. 11. 25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위원수 : 11명
- 안건명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명단

위원장	간 사	위 원
강동화	전수명	차형보, 노창섭, 이화철, 강기일, 장병운, 김문웅, 조갑련, 이해련, 정영주

| 위원회 활동 내역 |

- 제 1차 회의(2011. 11. 25) : 위원장, 간사 선임
- 제 2차 회의(2011. 12. 19)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485,134,552	100.00		2,500,078,481	100.00		△14,943,929	△0.60
지방세수입	562,755,000	22.64		561,912,586	22.48		842,414	0.15
세외수입	851,486,494	34.26		860,744,312	34.43		△9,257,818	△1.08
경상적세외수입	406,922,191	16.37		437,827,677	17.51		△30,905,486	△7.06
임시적세외수입	444,564,303	17.89		422,916,635	16.92		21,647,668	5.12
지방교부세	277,773,673	11.18		275,334,673	11.01		2,439,000	0.89
재정보전금	200,000,000	8.05		200,000,000	8.00		0	0.00
보조금	581,284,765	23.39		590,252,290	23.61		△8,967,525	△1.52
국고보조금등	437,257,134	17.59		446,889,464	17.88		△9,632,330	△2.16
시·도비보조금등	144,027,631	5.80		143,362,826	5.73		664,805	0.46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834,620	0.48		11,834,620	0.47		0	0.00
예치금회수	11,834,620	0.48		11,834,620	0.47		0	0.00

2 예산심의 활동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485,134,552	100.00	2,500,078,481	100.00	△14,943,929	△0.60
일반공공행정	108,529,330	4.37	113,110,559	4.52	△4,581,229	△4.05
공공질서 및 안전	20,295,686	0.82	20,756,669	0.83	△460,983	△2.22
교육	40,379,057	1.62	40,508,524	1.62	△129,467	△0.32
문화 및 관광	275,927,968	11.10	267,126,406	10.68	8,801,562	3.29
환경보호	326,020,741	13.12	322,976,977	12.92	3,043,764	0.94
사회복지	521,748,679	20.99	517,807,203	20.71	3,941,476	0.76
보건	107,818,851	1.07	26,972,037	1.08	△317,975	△1.18
농림해양수산	106,467,450	4.34	109,483,544	4.38	△1,664,693	△1.52
산업·중소기업	301,502,183	4.28	104,128,824	4.17	2,338,626	2.25
수송 및 교통	328,367,351	13.21	337,131,984	13.48	△8,764,633	△2.60
국토 및 지역개발	303,055,507	12.19	311,561,284	12.46	△8,505,777	2.73
예비비	17,493,764	0.70	20,142,055	0.81	△2,648,291	△13.15
기타	302,376,106	12.17	308,372,415	12.33	△5,996,309	△1.94



3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박철하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통합창원 신청사 소재지, 야구장 후보지 등에 대하여

질문 통합시청사소재지의 1순위가 마산,진해, 2순위가 창원으로 되어있는데 순위에 대한 개념은 있는지 그리고 1순위가 아닌 2순위인 39사나 현재임시청사로 결정된다면 통준위의견과 시민과의 약속 위배는 아닌지?

답변 순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1순위 후보지중에서 결정할 것인지 2순위 후보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문 현 야구장 6개후보지중 구. 육대부지만 부정적인 측면, 즉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후보지별로 단점, 장점, 좋은점, 나쁜점은 다 있을 것이다. 다만 모두에 그런기사가 나왔다면 잘못된것이라 생각한다. 시가 편애나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질문 진해에 쏠라파크나 제왕산 공원이 타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상징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독창성이 결여되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답변 상징물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타워형 전망대와는 다르다. 그리고 상징물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다. 우리가 상징물을 개성있게,특색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태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무료화촉구 및 동마산권 상권활성화등에대하여

질문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요금은 무료화 해도 세출예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며, 통합이후 창원 진해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리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도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무료주차에 따른 장기방치차량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정도 제도를 마련한 후 시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질문 구 마산의 한축인 동마산 상권에 대하여 통합후 지금까지 용역만 하였을 뿐 상권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용역을 마무리한 지난해8월 주민설명회를 한차례 개최하였으며 12월에 78개 점포를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여 법령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연말께 중기청에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질문 역전파출소뒤 복개주차장은 금년6월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대체 대체주차장 마련없이 복원할 계획인가??

답변 대체주차장이 설치되지 않고는 복원할수 없다. 그래서 역전주차장을 일부 정비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다.

3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3. 5(월), 10:00~)



김태웅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롯데백화점 비 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 30일 전에 해고 예고제라는 것이 있는데 롯데백화점이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감행 하였는데 이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서 원천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보고를 받았는가?

답변 근로기준법상 해고하기전에는 해고 예고기간을 30일로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롯데백화점 하청업체에서는 해고 예고 기준을 30일전에 하지않고 법령을 위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현재 사측이 선별고용하겠다 라는 입장이고 노조측은 14명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원청인 롯데백화점이 어떤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장기화될수 있다 이번사태에 대한 시의 의지는?

답변 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노동부 등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쌍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도로표지판 지명 및 각급 기관명 표기, 마산지역 철거대상 육교 등에 대하여

질문 통합이후 마산,진해에 고향을 둔 향우인들이 고속도로나 국도를 통해 고향으로 오면 마산,진해표기명은 온데간데없고 전부 창원 몇km로 되어 있어 마산,진해 향우인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답변 옛 마산, 진해 향우인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고속국도와 국도상 표지말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로 보조표기가 될수 있도록 도로관리소에 협조요청 하겠다.

질문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경남대 육교를 시범철거 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지난해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에서 횡단보도 신설이 가능하다 하였다. 횡단보도는 합포구청에서 설치할 계획이며, 육교주변화단과 환경정비가 되고나면 병행해서 철거하도록 하겠다

질문 3.15창작유지컬 "3월이 오면"을 전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매개가 될 역사문화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답변 세계 많은 도시들이 문학적 소재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3월이 오면 창작유지컬을 창원시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3.15기념사업회, 유관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통합창원시 출범 후 도로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관련에 대하여

질문 창원시 도로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휘와 감독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창원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에게 공개사과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저는 평소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정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이번 도로과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저의 노력과 시정의 청렴성이 비판받게 된것에 대하여 한없는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느낀다. 이번사건과 관련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질문 부정부패와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대책은?

답변 이번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시정전반에 걸쳐 부정비리 소지가 있는 곳은 전부 찾아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감찰인력 보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순규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에 대하여

질문 항로수심을 12.5m에서 마산항의 물류여건이나 이런 조건을 고려할때 12m로 다시 정부와 재조정 협의할 용의는?

답변 12.5m가 최대 마지노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질문 해양신도시 실시 협약안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사업시설, 주거지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란 명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해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변경은 곤란하다. 차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개발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서항지구 토지이용 계획변경안이 결정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질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의 10년 또는 100년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일본의 도쿄만처럼 인공갯벌형해양생태공원으로 한번 재고할 의향은?

답변 일본 도쿄만의 여건과 우리 마산만의 여건은 완전히 다르다. 마산만에 갯벌형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한다.

4 5분 자유발언



김태웅 의원

창원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 창원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12. 1. 30)

창원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인한 노사갈등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부당하게 자행된 집단해고에 사측이 전혀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임,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고자가 정든 일터로 돌아갈수 있도록 중재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학교폭력 근절 등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하여.. (2012. 2. 28)



문순규 의원

경전선 복선전철 소음피해 대책 촉구 (2012. 1. 30)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선 복선전철 공사이후 열차운행으로 인한 굉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구암동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우리시가 직접나서서 중앙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음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읍면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촉구(2012. 1. 30)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결 대책을 강구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일소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마산합포구 월영동 주민 및 월영동장님께서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



이옥선 의원

대형 유통점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2012. 2. 28)

지난1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게 되었다. 휴무제실시는 대형유통점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지역소상공인들과의 공생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우리시에서도 대형유통점의 휴무제와 관련한 조례제정 및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윌태 의원

창원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 개선용역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2012. 2. 28)

창원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 용역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보고서 내용과, 이 용역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했는지, 용역결과가 창원시에서 기대한 선진보육도시를 만드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강용범 의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2012. 2. 28)

우리시의 도시가스 전체 공급률은 71.4%이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44.4%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지역 단독주택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박순애 의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조속한 지원에 대해 (2012. 2. 28)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하루 2,500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중 절반정도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으로 복지관운영과 셔틀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해구민들의 보편적 복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함.



김종대 의원

환경성질한 개선을 위해 환경부 환경마크획득 천연자재로 마감하는 주거 환경 만들자 (2012. 2. 28)

환경호르몬으로 범벅이 되어있는 우리의 주거환경을 건강하고 안락한 청정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마크인 환경마크를 획득한 벽지와 마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제안함.



전수명 의원

기존 교통수단을 활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언 (2012. 3. 7)

자전거 관광활성화와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에 접근성을 높이고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덱시, 콜벤 등에 기존 승용, 승합차량에 부착가능한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한 일명 바이크 콜택시를 도입, 운영할 것을 제안함.



김윤희 의원

진동면 사동교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2012. 3. 7)

진동면 사동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이후 기존 국도에 있는 교량으로 전동환승장에서 고성방면 200m에 위치하고 있는 급커브 길로 4차선에 차, 사람, 자전거가 함께 다니다 보니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 설치, 야간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등 설치, 도로위 물고임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도로변 배수로 설치 등을 제안함.



공창섭 의원

칠서정수장 인근 폐주물사 매립과 관련하여 (2012. 3. 7)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고 있는 칠서정수장 인근에 폐주물사를 매립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 임으로 우리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폐주물사 매립과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5 건의서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미국은 사고 등급 5등급의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간 단 한 기의 원전도 건설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 폐기를 결정하였고, 이태리,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전 폐기, 그 밖의 여러 국가들은 점진적 폐기 또는 원전 확대정책 재검토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유일하게 한국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 부지를 영덕과 삼척으로 발표하는 등 선진 국가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삼척과 영덕에 원전 8기가 들어서면 한국의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21기와 건설 중인 7기, 건설계획 중인 6기를 합쳐 42기가 되어 원전 대국이 된다. 사고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대형 사고는 모두 원전 대국과 원전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히로시마 원폭의 168배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고 하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4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아직까지 15만여명의 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하여 연장 가동 중이다. 비용 절약을 위하여 중고 부품을 사용하였고 그동안 가동중단 사고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수없이 있었던 위험한 원전이다. 후쿠시마 원전 10기 중 오래된 원전 4기만 폭발한 것을 보더라도 오래된 원전은 위험하다.

따라서 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고리원전은 창원시에서 불과 56km 떨어진 곳으로 직접적인 사고 피해 지역이다.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시 30km이내 거주하는 322만 주민이 대피하여야 한다. 그들이 모두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 영남지역 전체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연 수출 규모 250억불, 총생산 규모 28조원의 창원시 소재 기업체를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원전 사고 예방과 사고시의 주민 대피 계획 등 원전사고대비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2.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확대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모든 건물 신축 시 에너지 절약 시설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대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촉구한다.

2012. 3. 9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건의안



창원시 의회는 지난 2012년 2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체포된 10여명을 포함한 중국 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난민으로서 누려야 할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난민이 아니라 “불법월경자”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UN은 2009년 12월 18일 제64차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결한 사실에 유의하고,

창원시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유엔 난민조약의 준수와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 조약의 책임을 유념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다해줄 것과, 북한 이탈주민이 복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제반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복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세계 각국 정부와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등 인도주의적 국제기구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적극 앞장서 줄 것과,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 주민 보호를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들이 희망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12. 3. 9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6

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지난 1월18일 제1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난회기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기간을 1월 30일, 1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 1월 20일에는 “희망2012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회 의원 55명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1,780,000원을 MBC경남창원본부에 전달하였다.
- 이어 2월 22일 개의된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위원회에서는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기간을 2. 28~3. 7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3월19일에는 각계인사를 초청해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제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지난 2월 29일 금년부터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된 소방업무에 대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창원소방본부를 방문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 이어 지난 3월 6일에는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 하였다.

이날 심의한 안건을 살펴보면 창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구 및 읍면 동명칭과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제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월 2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균형발전국과 해양개발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등 각종 대형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형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대안제시 등이 있었다.
- 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공급확대,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에 각종 대형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돗물에 대한 누수율 방지와 하수관거사업 조속처리 등에 대하여 당부하였다.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폐주물사 매립으로 칠서정수장 수돗물 오염을 우려하여 제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6일 칠서정수장 인근의 폐주물사 매립지를 방문하여 실태보고와 매립현장을 확인 한후 수돗물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경/제/복/지/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석)은 지난 1월9일 경제복지위원장실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대학생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어 지난 2월 29일에는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전위원과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대표자 6명, 전통상가 대표자 7명, 집행부 공무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지정관련 조례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윤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 3월 6일에는 창원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문/화/위/원/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강장순)는 지난 3월 6일 제18회 창원시의회 제1차환경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날 심의한 안건을 살펴보면 창원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지침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창원시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조례안은 12조1항, 16조3항 일부를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일부를 창원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은 제20조2항 일부를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용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수정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선진도시 청사 및 공공건물의 다양한 건축 양식과 항구재개발사례 및 계획도시 운영체제 등을 배우기 위하여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다.
- 이어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18회창원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고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다.
- 이날 심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창원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02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 첨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창원시 부설공사 방지 조례안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내용을 보충하고 연구해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류하였다





김이수의장 경남신문주관 신년인사회 참석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지난 1월3일 개최한 경남신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참석들과 함께 신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준공식

1월10일 김이수의장과 지역인사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신축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역을 절단하고 있다.



창원시 민원콜센터 개소식

김이수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1월17일 개소한 창원시 민원 콜센터에 참석하여 민원콜센터를 둘러 보고 있다.



정월대보름 축제 줄다리기 행사

김이수창원시의회의장이 2월6일 진동면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축제 줄다리기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고 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의장단과의 간담회

2.23일 의회의장실에서 의회의장단과 창원교육지원청임성택교육장 등 교육관계자들이 모여 창원교육발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남영상위원회위원장 창원시의회내방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2월27일 제2대 경남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우 정한용씨를 맞이하여 지역영상발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유원석 부의장 무료급식 봉사

창원시의회 유원석부의장이 지난 1월 4일 한울타리회 자은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진해 안골초등학교 교사 의회방문

유원석부의장이 지난 3월 21일 창원시의회를 방문한 진해 안골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안전운전, 안전경남 선포협약 결의대회

지난 2월 27일 김이수의장이 I LOVE 안전운전, WE LOVE 안전경남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3.15의거 제52주년 추모제

김이수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3월 14일 개최된 3.15의거 제52주년 추모제에 참석하여 영령들에게 묵념을 올리고 있다.



창원시 관내 초등학생 의회 방문

지난 3월 27일 창원시관내초등학생 120명이 어린이회의진행 교실 연계학습과 의회의 역할 등을 체험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회를 방문하였다.



제50회 진해군항제 개막식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이 지난 3월 31일 개최한 제50회 진해군항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기간결정
이상인의화운영위원회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소방본부 등 방문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위원장과 의원들이 2월 29일 소방관련 업무현황 파악을 위하여 창원소방본부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칠서정수장 주변 토양오염현장 방문
박해영균형발전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3월 6일 수돗물 안전을 위해 칠서정수장 인근 폐주물사 매립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제복지위원회 안전심의
이상석경제복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2월 29일 경제복지위원회실에서 창원시효행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환경문화위원회 안전심의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3월6일 환경문화위원회실에서 창원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전심의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3월6일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창원시 부설공사방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8 언론보도 자료



창원시의회 모바일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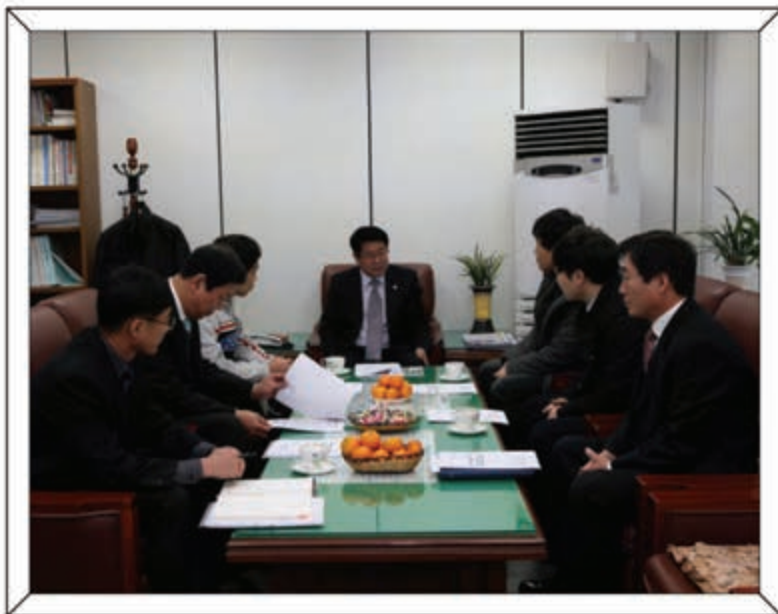


창원시의회(의장:김이수)는 지난 1월 2일부터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 등을 스마트폰과 휴대용 IT기기 등을 이용해 시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http://mcouncil.changwon.go.k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소식, 의사일정, 의원프로필, 5분발언, 시정질문, 회의록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본회의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아무데서나 휴대용 IT기기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가지역에 대한 관심제고는 물론 의정현안에 대한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창원시의회 모바일홈페이지 접속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창원시의회"를 검색하거나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QR코드를 스캔해서 접속 하면 된다.

김이수 창원시의회의장은 이번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로 시민들이 의회 의정활동사항 손쉽게 접근함으로써 시 의원과 시민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되었으며, 시민들이 우리시의회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사항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등도 제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창원시의회 이상석경제복지위원장 대학생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이상석경제복지위원장이 1월 9일(월) 경제복지위원장실에서 「청년과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관내 대학생 대표자들과 간담회는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듣고 문제점해결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상석경제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창원시일자리창출과장과 관내 대학생 대표 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19(일구하기)프로젝트」등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참석한 대학생들은 취업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이상석경제복지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되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우리시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청년들도 꾸준한 자기개발과 인성을 함양하여 취업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시의회 교육발전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지난 2월 23일 11시30분 의회의장실에서 2012년도 창원시 교육발전 논의를 위해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 등 의장단 11명과 창원교육지원청 임성택교육장과 교육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창원교육 현황및방향」,「2011.창원교육주요실적」,「2012.창원교육 주요계획」,「2012.창원교육 중점과제」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교육발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 하였다.



8

언론보도 자료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방본부 방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이찬호)는 소방 관련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월 29일 창원 소방서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부터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를 보고있는 소방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창원소방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업무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제7주년 기념식 개최

창원시 의회(의장:김이수)는 3월 1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창원시장, 임영주 대마도의 날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시의원 등 110명을 초청한 가운데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제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박중철대마도의날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의 "영토에 대한 역사적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날 특강을 맡은 박중철위원은 젊은이들이 역사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역사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토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질서속에서 우리의 국력이 커졌을때, 고토회복을



위해서는 영토에 대한 영속적인 역사가 존재해야하며 영토에 대한 교육과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이수의장은 기념사에서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영토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으로 무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진 민족으로 우리의 돌하나 풀한포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마도의 날 기념식은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 각인시키고 영유권 주장 등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구. 마산시의회)가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칠서정수장 인근 폐주물사 매립현장 확인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은 지난 3월 6일 오전 칠서정수장 인근의 폐주물사 매립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실태 보고 청취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폐주물사는 폐기물관리법령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로서, 550m의 거리에 위치한 칠서정수장으로 유입될 경우, 급수시민 73만 9천여명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관련 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수돗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후에는 진동하수관거 정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행업체 관계자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어린이 회의 진행교실 연계학습을 위한 의회 방문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생 120명과 교사 40여명이 지난 3월 26일 창원시의회를 견학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새창원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24회 어린이 회의진행교실' 연계학습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의회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실제 회의진행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며 올바른 회의진행과 건전한 토의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이수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어릴 때부터 형성된 올바른 회의문화는 상대를 배려하는



힘과 함께 협동심, 인내심, 양보와 관용의 정신을 기를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좋은 학습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 창원시를 빛내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훌륭한 인재로 자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방문은 창원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의회홍보영상을 상영과 의원들의 실제 회의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이 있었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방문일정을 모두 마쳤다.

씨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해 연 의원

● 산업화시대를 거쳐 고도의 정보화시대로 흐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환경은 거대한 콘크리트와 구조물 속에서 생활환경의 파괴로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 잃어가고 있다. 21세기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슬로건을 내건 자치단체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살린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 가고 있음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일본 도쿄 근처 가와구치시를 횡단하여 흐르는 시바강 살리기에 관한 TV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시바강은 45년 전 수문을 폐쇄하면서 오폐수로 인해서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강으로 변해 버렸다. 그 후 시바강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고 철저한 실천으로 지금은 수질이 개선되어서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는 새 생명의 강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강 주변에 식물을 심어서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서 미생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하였고, 탄소섬유를 강가에 달아서 이를 통해 미생물의 생성을 도왔다. 또한 목탄 주머니를 만들어 강 곳곳에 투하하여 수질의 정화 작용에 도움을 주었고 갈대를 심어서 갈대뿌리에서 강한 산성을 만들어 미생물을 번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갈대를 심을 때 썩은 흙은 걷어내고 매트 플로아를 깔고 그위에 썩은 흙을 부어서 갈대를 심어서 썩은 흙이 정화되게 하였다. 각 가정에서는 cm(이엠)발효액을 사용하여 악취를 없애고 물을 정화에 노력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 처리가 원활해져서 강물의 수질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바강은 물고기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살아가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 후 나도 이엠(유용미생물 발효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무료로 구민들에게 보급하고 있기에 시 전체가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연을 파괴해 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지구의 종말론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지구는 중병에 걸려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더욱 병이 깊어가고 있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떠오르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씨를 뿌리는 나날이 되어서 자연이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우리에게 인사하는 아름다운 생각을 꿈꾸며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존하여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배움과 깨달음의 의미



강 장 순 의원

● 사람이라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배움의 길 위에 서서 자의든 타의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어떤 이는 출세와 명예를 위해, 또 다른 이는 물질적·정서적 풍요를 얻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혹은 남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함일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저 남들이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배움은 즐거움과 고단함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에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배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설정했던 인생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비교적 가까이 접근해 있을 것이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분명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배움과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배우고 있는 사람이 모두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직시하고 배우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 소를 잡는 장인은 무수한 칼질 끝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도를 깨우치고, 농부는 수없이 갈아엎는 흙속에서 삶의 지혜를 수확하며, 노동자들은 부단한 노동 속에서 땀의 소중함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 분야의 최고 반열에 올라 있을 것이다.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에서 공자는 사람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등급은 생이지지(生而知之)한 사람, 즉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다. 둘째 등급은 학이지지(學而知之)한 사람, 다시 말해 평생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다.

셋째 등급은 곤이학지(困而學之)한 사람, 즉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려 애쓰는 사람이다. 넷째 등급은, 곤이불학(困而不學)한 사람, 즉 어려워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배우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 우리 모두가 '곤이불학(困而不學)' 하지 말고, 괴롭더라도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를 생각한다



이 상 석 의원

●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복지'이다. 여야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는 자선 또는 사치라고 여겨 왔던 풍토를 생각하면 세상이 크게 변했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먹고살 만한 처지가 됐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너무 짧아 넘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정책과 예산을 챙기는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실험단계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관련 부처에서 나름대로 촘촘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분배구조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장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각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겪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복지재정의 안정화라는 상충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였다. 복지는 경제발전과 함께 한 도시의 성숙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복지수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도시가 아닐까. 따라서 복지정책을 구현할 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따지는 것도 정책의 최대 포인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복지의 관점도 일방적 수혜적 복지에서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시키는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당장 듣기 좋은 '퍼주기식'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걱정하지 않을 거시적인 안목의 복지정책을 내놓길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노트



박 순 애 의원

● 언제부터인가 책장에 쌓여가는 먼지와 책들을 정리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은 맘먹고 책을 꺼내어 먼지도 털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다 보니 내 손바닥만 한 노란색 감사노트가 눈에 들어온다.

몇 년 전 자원봉사 센터장을 할 때 봉사자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그때는 노란색 표지도 예쁘고 작지만 매일 적을 수 있는 책으로 된 감사노트가 마음에 들어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그날그날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어야겠다고 맘먹고는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 놓아 본다.

감사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상대방에 대해 물질적으로나 무엇을 대신 도와주거나 해주었을 때는 서슴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잘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현실은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 비율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항상 감사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부정적인 부분을 나중에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지 않을까?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삶에는 늘 행복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 갈수록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가 싶다.

불행과 과거를 이겨내고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거인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성공한 지금도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일기에는 그리 특별한 일이 없이 '오늘 아침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수프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쁜 아이를 본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감사는 그런 것 같다. 옷 한 벌, 밥 한 끼, 숨 쉬는 공기, 따뜻한 햇빛, 산, 바다 등...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감사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만약 감사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며,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미리 울지도 모를 걱정을 하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서 반성도 하고, 감사도 한다면 정말 편안한 잠을 이뤄 건강한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2011년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노 창 섭 의원

●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수첩이나 노트에 하루하루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 왔다.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나의 수첩은 유틸리티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알아보기 힘든 껍알 같은 글씨와 암호가 적혀 올해도 만신창이가 돼 있다.

고 스티븐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국내에 2000만 대가 보급돼 가히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고 스마트폰과 함께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를 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치인으로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없어 필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나의 습관은 아직도 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 2012년 새로운 수첩을 꺼내면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임진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1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수첩을 살펴보니 첫 일정으로 용지공원대종각 타종식 참석을 시작으로 한 해를 출발했고 창원시 공무원 조직개편 조례심의, 프로 야구 9구단 창단 및 야구장 신축, 2010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주민 참여 예산조례 제정, 2012년 당초 예산 심의, 창원시 시청사 신축 위치 조기 결정 논란으로 창원시 의회 파행 등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정말 바빴을 날 없는 한 해였다. 아직도 청사 문제는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 지금 고통은 일부 정치인들과 정부에 의해 주도된 출숙통합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창원시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지금의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지금의 고통은 더 큰 창원시 발전을 위한 과정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산고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 속담에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는 말이 있다. 고통이 있는 만큼 더욱더 정숙된 창원시가 될 것이다. 이제 올 한 해 수첩의 마지막 장을 남기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등으로 서민들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미래의 희망과 비전은 삶의 원천이다. 내년엔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자. 임진년 새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 그 어느 때보다 길한 해이며 국가의 중대사가 있는 중요한 한 해로 꼽히고 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원전 신규계획·수명연장 백지화를 촉구한다



김 종 대 의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커녕, 도쿄권의 2차 대지진 예고설로 일본은 패닉상태이다. 이바라키현과 지바현 앞바다의 활성단층들이 연동해서 강진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악마의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악마의 연쇄반응’이란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수습을 제대로 못해 인근 원전까지 망가지는 연쇄반응으로 도쿄까지 위협해지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태 때 당시 일본 정부는 ‘악마의 연쇄반응’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이것을 막으려고 총력을 집중한 것으로 밝혀졌고, 향후 원전 사고 때도 현존할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환경에 누출된 방사성 물질 양은 체르노빌 이상으로 알려졌고, 히로시마 원폭의 168배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경제적 피해규모는 4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원전 주변지역 반경 20km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출입금지지역이 되었고, 인근주민 15만여 명이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9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 가동수명 30년을 채우고도 정부가 원자력법을 개정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가동수명을 10년이나 연장 운행하고 있는 ‘1호기’가 또다시 고장 나 ‘스테이션 블랙아웃’ 사태가 12분간이나 일어났고, 또 그것을 1개월이나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은 전체 발전량의 1%에 불과함에도 가동 수명연장을 하는 것은 핵산업계의 투자비 회수 후(가동 후 15~20년) 이익을 계속 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명연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1호기’는 1978년 첫 가동 때부터 2011년까지 발전기 자체설비고장으로 불시 정지건수가 108건이나 되는 최고의 문제 원전이다.

삼척과 영덕에 원전 8기가 들어서면 한국의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21기와 건설 중인 7기, 건설계획 중인 6기를 합쳐 42기가 되어 원전대국이 된다. 원전이 많은 곳에서 사고 위험 또한 커질 수 밖에 없고, 설계 가동수명이 다한 원전일수록 사고발생비율은 높아진다. 단위면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원전대국인 우리나라는 원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와 관계자들의 안일한 사고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본다. 고리원전 1호기가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사고 시 30km 이내 거주하는 32만 명의 주민은 긴급히 대피하여야 한다.

정부와 원전관계자들은 그들을 어디로 대피시킬 대책인가? ‘악마의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는가?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따라서 정부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과 설계 가동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원자력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핵산업계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NGO,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또 만약의 원전사고 예방과 주민구호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산업정책을 에너지 다소비구조에 맞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전환하여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회
council.changwon.go.kr